

	보 도 참 고 자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		
책임자	최용호 과장(2156-9750)	담당자	신상훈 사무관(2156-9764) 윤동욱 사무관(2156-9671)
배포일	2016.3.3.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 매

제 목 :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경영가능업무 승인

- 금융위원회는 '16.3.3.(목)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）」에 따른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서
 - 일임형 ISA를 「중소기업은행법」상 **경영가능업무*로 승인****하였음
 - *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투자일임업
 - **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(3.2 금융위 의결)을 통해 경영업무에 추가하였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 필요
 -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**중소기업 임직원** 등의 **재산형성 지원**을 위한 **개인금융 서비스**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
 - * 기업은행법 제1조 : 이 법은.....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금번 일임형 ISA 경영가능 승인에 따라, 기업은행은 타 일반은행과 함께 **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(투자일임업) 등록**이 가능
 - 다만, **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*** 검토는 금번 **기업은행법상 경영가능 업무 승인**과 **별도로 실시**될 계획임
 - * 투자운용인력 규모, 임원 및 대주주 요건, 이해상충방지체계 등

- 다만,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, 금번에는 **경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음**
 - '15.11월 발표한 '기업은행·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'에 따라
 -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**핵심역량을 집중**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**외 분야**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으며,
 -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
 - * 16년 산업은행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% 내외
 -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**시장마찰을 최소화**할 필요가 있음



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